

지역사회
중심재활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 다운로드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검색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http://www.nrc.go.kr>)
홈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알림마당 ⇨ 자료실 ⇨ 검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홈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자료 ⇨ 검색

본 사업지침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지역사회중심재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서이며, 인력 및 예산집행 등 행정사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2021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2021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08
1. 사업 개요	14
가. 사업 목적	14
나. 사업 목표	14
다. 추진 전략	14
라. 사업운영 방향	15
마. 법적 근거 및 정책	15
바. 연혁	18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20
가. 담당 인력관리	20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22
다. 지역자원과의 연계	25
라. 멘토링 제도	26
3. 사업 내용	28
가. 계획 수립	28
나. 사업 대상자	28
다. 대상자 군 분류 기준	29
라.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29
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제공 과정	32
바.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34
사.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36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39
5. 행정사항	41
가. 주요 일정	41
나. 성과 평가	42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42
라.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3
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 집행	43

● [부록] 참고

1.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유형 예시	46
2.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47
3.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정도	72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의소 현황	78
5.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80
6. 개인정보 보호 안내	82
7. 유용한 평가도구 예시	84
8.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87
9.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89
10.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91
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95
12. 기관별 연락처	107

● [부록] 서식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14
2. 상담기록지	117
3.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118
4. 재활기록지 I, II	120
5.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124
6. 삶의질 평가(EQ-5D)	125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127
8.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128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상담지 및 점검지	129
10.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II 및 회송서	131
11. 사업 만족도 조사	135



2021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2021년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안내서」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을 통합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하였으므로 세부 변경사항은 사업안내 내용 확인

페이지	2020년	2021년	비고
14p	다. 추진 전략 및 체계 2) 추진체계 3) 추진 체계도	다. 추진 전략 표 삭제	표 삭제
17p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장애인 건강 목표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장애인 건강 목표치	2020 → 2030으로 표 변경
18p	바.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추가 지정(부산, 인천, 경기, 제주) 및 CBR 사업 인력 60명 총원(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상도, 제주) 	내용추가
24p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6) 운영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 하되 _____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6) 운영 _____ * 필요시 서면회의(비대면 회의) 운영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서면회의(비대면회의) 운영 필요
29p	정기관리군	정기관리군	정기관리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가횟수 증가, 재활 기록지 II 작성 필요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이상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전환 미방문 기간 총 2년 초과 시 전출, 사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전환 미방문 기간 총 2년 초과 시 전출, 사망 시 	
	정기적	정기적	
	연 1회	연 2회	
재활기록지 I	재활기록지 I, II		

페이지	2020년			2021년			비고		
29p	라.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19년도 지정된 지역센터(서울북구, 제주, 강원)의 보건소는 ’20. 1월부터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 운영			라.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20년도 지정된 지역센터(부산, 인천, 경기, 제주)의 보건소는 ’21. 1월부터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 운영			사업 내용 반영		
31p	서비스 구분	군 분류		세부 프로그램 (예시)	서비스 구분	군 분류		비고	
		집중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집중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④ 자원 연계 서비스	필수	선택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 의료기관과 연계(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③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④ 자활센터와 연계 ⑤ 행정기관과 연계 ⑥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⑦ 장애인단체와 연계 ⑧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⑨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⑩ 장애인 운전 지원 ⑪ 기타	④ 자원 연계 서비스	필수	선택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 의료기관과 연계(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 자활센터와 연계 ⑥ 장애인단체와 연계 ⑦ 행정기관과 연계 ⑧ 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 장애인 운전 지원 ⑪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 건강검진 지원 ⑭ 기타
		선택	필수			⑤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⑤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필수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 기타	⑤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필수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 기타
	⑥ 지역 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⑥ 지역 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① 프로그램 소개 ② 나를 이해하기 ③ 일상생활 동작관리 ④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⑤ 건강관리 운동 ⑥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⑦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⑧ 마무리

페이지	2020년	2021년	비고																													
33p	3) 지역사회 장애인 중 사례관리자 필요한 경우 • 조기적응프로그램(일상생활 계획하기 등)	• 내용삭제	재가 장애인 사례관리 시 조기적응 프로그램 적용안함																													
34p	초기 상담 • 초기상담 및 재활사정(기능평가 및 삶의 질 평가 등) - 집중관리군 : _____ -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 _____ •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재활 요구도 파악	초기 상담 • 초기상담 및 재활사정(기능평가 및 삶의 질 평가 등)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 _____ - 자기역량지원군 : _____																														
39p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4) 과정별 개요 • 신규종사자 의무교육(총22h)은 집합(20h), 온라인(2h) 구성 • 기존종사자 교육(총7~20h)은 집합(7~20h)으로 선택과정 구성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4) 과정별 개요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021년도 교육 전 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관련: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743(2020. 6. 29)호 •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일부 과정 대면 교육 전환 가능	내용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무기본과정</th> <th>실무심화과정</th> </tr> </thead> <tbody> <tr> <td>교육 목적</td> <td>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습득</td> <td>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종사자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도모</td> </tr> <tr> <td>교육 대상</td> <td>• 근무 경력 18개월 이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td> <td>• 실무기본과정 이수자 중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각 전문분야별 면허(자격소지자)</td> </tr> <tr> <td>교육 시기</td> <td colspan="2">3월 ~ 11월</td> </tr> <tr> <td>교육 시간</td> <td>• 집합 교육(20시간, 3일 과정) • 온라인 교육(2시간)</td> <td>• 1일 과정(7시간), 2일 과정(14시간), 3일 과정(20시간)으로 선택</td> </tr> </tbody> </table>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목적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습득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종사자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도모	교육 대상	• 근무 경력 18개월 이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실무기본과정 이수자 중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각 전문분야별 면허(자격소지자)	교육 시기	3월 ~ 11월		교육 시간	• 집합 교육(20시간, 3일 과정) • 온라인 교육(2시간)	• 1일 과정(7시간), 2일 과정(14시간), 3일 과정(20시간)으로 선택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무기본과정</th> <th>실무심화과정</th> </tr> </thead> <tbody> <tr> <td>교육 목적</td> <td>_____</td> <td>_____</td> </tr> <tr> <td>교육 대상</td> <td>_____</td> <td>_____</td> </tr> <tr> <td>교육 시기</td> <td colspan="2">2월 ~ 11월</td> </tr> <tr> <td>교육 시간</td> <td>•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11차시 / 확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5시간 / 예정</td> <td>•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4차시, 5차시, 8차시 /예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1일 과정(5시간), 2일 과정(8시간) /예정</td> </tr> </tbody> </table>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목적	_____	_____	교육 대상	_____	_____	교육 시기	2월 ~ 11월		교육 시간	•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11차시 / 확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5시간 / 예정	•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4차시, 5차시, 8차시 /예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1일 과정(5시간), 2일 과정(8시간) /예정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목적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습득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종사자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도모																														
교육 대상	• 근무 경력 18개월 이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실무기본과정 이수자 중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각 전문분야별 면허(자격소지자)																														
교육 시기	3월 ~ 11월																															
교육 시간	• 집합 교육(20시간, 3일 과정) • 온라인 교육(2시간)	• 1일 과정(7시간), 2일 과정(14시간), 3일 과정(20시간)으로 선택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목적	_____	_____																														
교육 대상	_____	_____																														
교육 시기	2월 ~ 11월																															
교육 시간	•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11차시 / 확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5시간 / 예정	•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4차시, 5차시, 8차시 /예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1일 과정(5시간), 2일 과정(8시간) /예정																														

페이지	2020년	2021년	비고																		
40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무기본과정</th> <th>실무심화과정</th> </tr> </thead> <tbody> <tr> <td>교육 내용</td> <td>• 온라인교육 - '장애와 인권' 2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집합교육 - 장애인건강권의 이해, 우수사업 사례, CBR 운영 가이드, 중도장애인 심리재활</td> <td>• 장애인 심리 지원과 상담 • 교육주제별 최신 정보와 지식, 기술 • 건강권 향상관련 다각적 접근 • 문제 중심적 다양한 해결 방안 등</td> </tr> <tr> <td>운영 주체</td> <td colspan="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내용	• 온라인교육 - '장애와 인권' 2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집합교육 - 장애인건강권의 이해, 우수사업 사례, CBR 운영 가이드, 중도장애인 심리재활	• 장애인 심리 지원과 상담 • 교육주제별 최신 정보와 지식, 기술 • 건강권 향상관련 다각적 접근 • 문제 중심적 다양한 해결 방안 등	운영 주체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무기본과정</th> <th>실무심화과정</th> </tr> </thead> <tbody> <tr> <td>교육 내용</td> <td>• 온라인교육 - 지역사회중심 재사업의 이해 • 온라인 실시간 교육 - CBR사업담당자 장애인건강권 교육</td> <td>• 지역사회일상생활 관리 • 지역사회장애인 감염병예방관리 • 장애인심리지원 과 상담 • 재활사업대상자 사례관리 등</td> </tr> <tr> <td>운영 주체</td> <td colspan="2">_____</td> </tr> </tbody> </table>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내용	• 온라인교육 - 지역사회중심 재사업의 이해 • 온라인 실시간 교육 - CBR사업담당자 장애인건강권 교육	• 지역사회일상생활 관리 • 지역사회장애인 감염병예방관리 • 장애인심리지원 과 상담 • 재활사업대상자 사례관리 등	운영 주체	_____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내용	• 온라인교육 - '장애와 인권' 2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강의) • 집합교육 - 장애인건강권의 이해, 우수사업 사례, CBR 운영 가이드, 중도장애인 심리재활	• 장애인 심리 지원과 상담 • 교육주제별 최신 정보와 지식, 기술 • 건강권 향상관련 다각적 접근 • 문제 중심적 다양한 해결 방안 등																			
운영 주체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 내용	• 온라인교육 - 지역사회중심 재사업의 이해 • 온라인 실시간 교육 - CBR사업담당자 장애인건강권 교육	• 지역사회일상생활 관리 • 지역사회장애인 감염병예방관리 • 장애인심리지원 과 상담 • 재활사업대상자 사례관리 등																			
운영 주체	_____																				
41p	'21년 5월 운영점검보고('20년 1~12월 실적)	삭제																			



1

2021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3. 사업 내용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5. 행정사항

가 사업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나 사업 목표

- 지역 장애인 중, 보건의료 미 충족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전 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공공조직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재활의료기관 등에서 의뢰되는 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소로 연계되는 예비 장애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협력으로 대상자 발굴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
 -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원으로 대상자의 사회참여 증진

다 추진 전략

- 장애인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보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조정 기능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 장애인건강보전관리의 지역 내 전달체계 확립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관내 보건소 간 보건의료-복지 연계와 조정기능을 구축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내실화로, 지역 내 자원 발굴·개선 및 서비스 지원

☘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 장애 감수성 및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인과 그 가족, 의료인 및 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실시

라 사업운영 방향

- 장애인 건강보전사업 전달체계의 기반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과 보건소 CBR사업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충
 - 전달체계가 구축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CBR사업 구분 운영
-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보건소 CBR사업 기능 강화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의 운영 내실화
 - 수요자를 위한 질적 서비스 지원에 중점

마 법적 근거 및 정책

1)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 3.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 5.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2) 정책

- 국정과제 3-1-42-5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중점과제 26. 장애인 건강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장애인 건강 목표치

지표명	2017	2023	2030
26-1.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통계를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 관련 국가통계 확대	0%	100.0%	100.0%
26-2.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시킨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64.9%	66.1%	69.9%
성인남성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66.6%	68.1%	71.6%
성인여성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62.5%	64.0%	67.5%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54.0%	55.5%	59.0%
성인남성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5.8%	57.3%	60.8%
성인여성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1.2%	52.7%	56.2%
중증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만 20세 이상)	18.1%	19.6%	23.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수	8	80	100
26-3.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시킨다.			
장애인 현재흡연율(만 20세 이상)	18.3%	17.7%	16.3%
장애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만 12세 이상)	22.8%	23.4%	24.8%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률	23.8%	26.8%	33.8%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장애율	46.5%	44.6%	42.5%
26-4. 장애인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장애인 비만 유병률(만 20세 이상)	43.4%	43.1%	42.4%
장애인 고혈압 유병률(만 20세 이상)	44.9%	44.9%	44.9%
장애인 당뇨병 유병률(만 20세 이상)	21.4%	21.4%	21.4%
장애인 골다공증 유병률	13.8%	13.8%	13.8%
26-5. 장애인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한다.			
장애인 우울증 유병률	12.1%	12.1%	12.1%
장애인 스트레스 인지율	58.1%	54.1%	48.1%
장애인 자살 시도율	1.4%	1.4%	1.4%
장애인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92.5명	88.5명	82.5명
26-6. 장애인의 건강보건의료서비스 수혜율을 높인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비율	11.1%	100%	100%
장애인 미충족 의료 이용률	17.2%	17.2%	17.2%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수혜율	4.7%	4.9%	5.0%
26-7.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률을 감소시킨다.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	90%	90%	90%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률	0%	0%	0%
26-8.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만족도를 증진시킨다.			
장애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16.2%	17.0%	18.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58.6%	60.2%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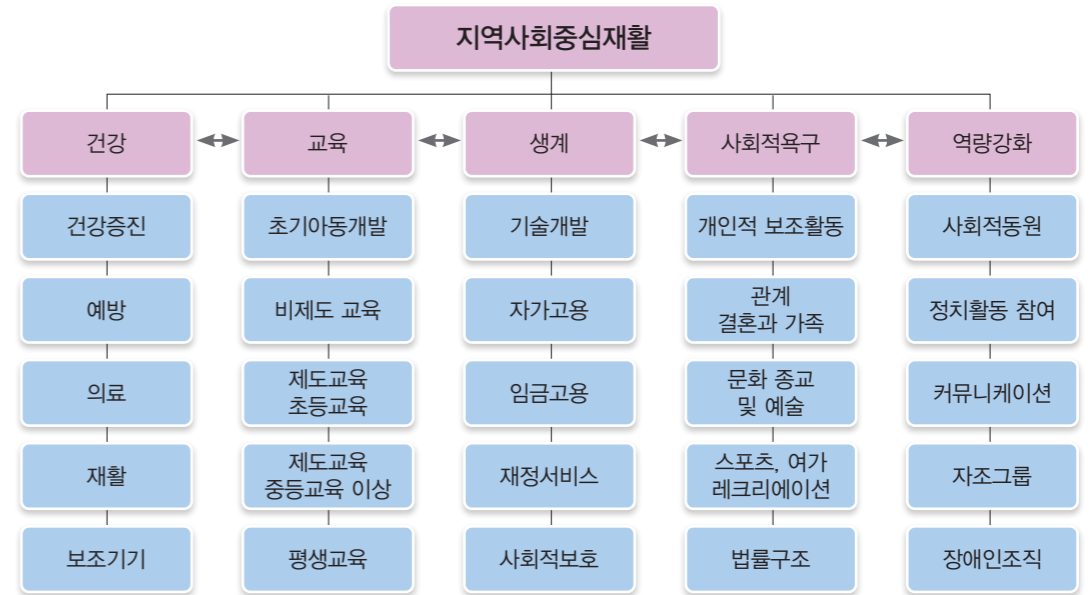
바 연혁

- '93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보건소 대상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실시
- '95~'97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 시범 실시
- '98~'99 : 경기도 내 전체 보건소 시범실시
- '00 : 거점보건소 16개소 선정 및 사업실시(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 '04~'06 : 거점보건소 45개소 확대('04. 20개소, '05. 25개소, '06. 45개소)
- '08. 10. :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부 통합 운영
- '11 : 거점보건소 60개소 확대
- '14~'16 : CBR사업 운영보건소 170개소 확대('14. 113, '15. 142, '16. 170개소)
- '17 : CBR사업 운영보건소 254개소로 전국 확대(필수사업으로 지정)
- '18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마련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정(서울남부, 경남, 대전)
- '1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추가 지정(서울북부, 강원, 전북) 및 CBR사업 인력 60명 충원(서울, 대전, 강원, 경남)
- '20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추가 지정(부산, 인천, 경기, 제주) 및 CBR 사업 인력 60명 충원(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북, 경상도,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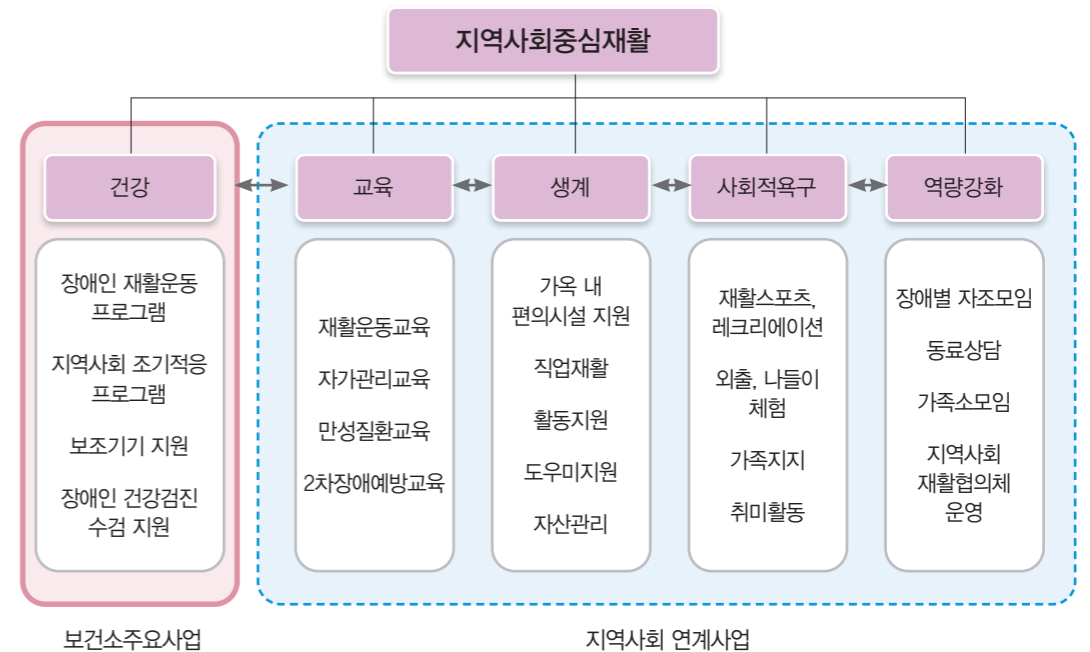
※ WHO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연혁

- 1978 : 알마타 선언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
- 1989 : "Training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BR 매뉴얼 출판, WHO
- 2004 : CBR 공동보고서 "CBR Joint Position Paper" 작성
- 2006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지역사회 개념 강조
- 2009 : 1st CBR AP Congress 개최(방콕)
- 2010 : CBR 뉴가이드라인 제시
- 2011 : 2nd CBR AP Congress 개최(필리핀)
- 2012 : 1st CBR World Congress 개최(인도)
주제 : The theme was using CBR as a mean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15 : 3rd CBR AP Congress 개최(일본)
- 2016 : 2nd CBR World Congress 개최(말레이시아) 주제 : Empowering and Enabling
- 2017. 1월 : 국립재활원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지정
- 2017. 2월 : Rehabilitation 2030 a call for action
- 2019 : 4th CBID(Community Based Inclusive Development) AP Congress 개최(몽골)

WHO CBR Matrix



CBR Matrix 보건소 활용



가 담당 인력관리

- 직제상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이 원칙이며, 기본인력과 연계인력으로 구성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통합건강증진사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
 - 기본인력 : 재활사업 담당공무원 1명, 재활전담인력 1명 이상
 - 연계인력 :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 의사, 간호사, 치료사는 필수인력으로 구성을 권장하며, 운영점검 시 인력구성 기준 사항에 포함되어 평가
- 직제상 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기능형'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
 - 기본인력과 연계인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구성하여 재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시 활용

1) 기본인력

① 재활사업 담당공무원

- 자격기준
 -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재활사업 담당자로 지정하고 담당자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
 - ※ 담당자 교체 시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에 통보
- 담당업무
 -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
 - 재활전담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등
- 교육이수(필수)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과정이수

② 재활전담인력

- 자격기준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채용 원칙
 - ※ 다만, 보건소 사정에 따라 시간선택 임기제 또는 기간제로 우선 채용 가능
- 담당업무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내소자 관리
 -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포함)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운영 지원 등
- 교육이수(선택)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과정이수
-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재활전담인력은 신규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함
 - * 내소자 관리,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공, 사후관리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필요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임
 -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및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17. 7. 20.)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이며, 민간위탁사업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적 업무가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됨

2) 연계인력

- 재활사업 관련하여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구성하여 협력
 - ※ 단, 보건소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사나 병원급 이상에서 전문의 1인을 연계자원으로 확보하여 기능형 팀의 일원으로 함(지역 외의 인력을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자문, 재활 평가, 관리계획 지시 및 팀원 교육 등 수행
- 팀원 중 1명은 내소 장애인 관리 담당으로 지정
- 내소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은 전담자의 요청에 따라 재가 맞춤형 재활관리 제공
-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 전체 주기적인 사례관리회의(서비스 계획 점검 등)

나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수)

※ 보건소별 상이한 업무 인력 규모, 지역사회의 자원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협의체 구성 가능

1) 목적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조직된 민관협력 협의체로, 지역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2) 기능(업무총괄조정 또는 개별 사례관리를 위한 실무협의 기능)

- 장애인의 의학적으로 취약한 신체기능 향상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적용과 당사자 주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무 수행

3) 역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방향 논의
-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강화
-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
-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4) 구성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의사회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

- 위원장(호선)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지역 내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단체장으로 구성
- 최초 협의체 구성기관은 5개 기관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예시

▶ 협의체 소속 기관(10개 기관)

기관명	기관 분류	기관명	기관 분류
○○구 보건소	행정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행정기관	○○주거시설	장애인주거시설
○○시립병원	의료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주민 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지사	공공기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치료사 협회
○○재활병원	의료기관	○○장애인부모회(참관)	장애인 당사자 단체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 보건소	· 재활협의체 회의 준비, 방문재활서비스, 사례기록지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례당사자 연계
○○시립병원	· 가정의학 전문의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연계
○○재활병원	· 재활협의체 자문, 재활전문 의 진료, 퇴원환자 연계
건강보험공단○○지사	· 사례 당사자 연계
○○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재활 사례 의뢰 등
○○주거시설	· 장애인 거주 시설, 자원봉사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학문적 조언, 방문재활 사례기록지 연구 사업 공동 진행 등
○○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당사자 입장 전달 등

5)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은 대상기관 후임 업무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

6) 운영

-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필요시 서면회의(비대면회의) 운영
- 참여기관, 협의내용, 운영현황 반드시 작성
 - ※ 부록 <서식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서식 8>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활용

7) 회의수당

- 회의 참석위원에게 1일당 최대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다만, 지자체별 법령, 조례에 따라 지급액 조정가능)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가능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8) 비밀유지

-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 ※ 부록 <참고 6> 개인정보 보호 안내 참조

다 지역자원과의 연계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연계

- 대상자 : 재활욕구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최종중 집중관리대상자*
 -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진 자
- 사업내용 : 보건소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최종중 집중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 세부사업 : 보건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례관리 요구도 사정 → 보건소에서 사례관리 대상 장애인의 의뢰 → 지역센터는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파악(의료문제, 건강보건관리, 교육 및 훈련 등) → 제공 프로그램별 팀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 대상자 관리진행 및 종료 여부 결정

2)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음
- 자문의사 지정 : 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지정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회의)
 - 재활실무 교육

3) 전국 보조기기센터와의 연계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기능형 장애인건강보건관리팀으로 연계하여 팀접근 회의를 통한 대상자 발굴·연계
- 연계내용
 - 대상자 발굴
 - 보조기기 서비스 : 보조기기 개조·제작, 구매 전 체험, 보조기기 유지관리(점검, 수리, 세척)

- 보조기기 교육 :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보조기기 사용/훈련 교육
- ※ 부록 <참고 10>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참조

4)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필수사항)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 개최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5) 자원봉사자 연계

-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함
-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함

라 멘토링 제도

1) 목적

- 멘토 보건소의 사업운영 및 우수사례 정보를 멘티 보건소와 공유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내실화

2) 운영

- 시도는 권역별 멘토 보건소를 매년 지정하여 국립재활원에 통보
- 임기는 멘토보건소 지정 후 1년(연임 가능)
- 멘토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어 멘토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
 - ※ 멘토보건소 활동내용에 따라 운영점검 시 가점 차등 부여
 - ※ 멘토보건소는 부록 <참고 12> 기관별 연락처 참조

3) 선정기준

- 우수기관 및 사업유공자 포상 등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보건소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가 우수한 보건소
- 멘토 보건소 역할이 가능한 사업경력 1년 이상인 사업 담당자
- 기타 멘토 보건소로 추천된 보건소

4) 역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전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등 정보공유
- 신규 보건소 및 담당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견학 프로그램 등 기획
- 지역의 의견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 지역(권역) 간담회 운영

- 목적 : 지역(권역) 내 재활병원, 시도, 보건소 등 재활관련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호 교류 및 연계 협력 강화
- 운영 : 시·도 사업담당자가 주도, 지역 멘토보건소와 협력하여 연 2회 간담회 개최
- 시도 역할
 - 지역(권역)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운영하여 멘토-멘티 보건소 실무자 간의 연계강화하고, 의견수렴하여 중앙에 건의
 - 관내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멘토 지역의 거점역할 수행 지원

가 계획 수립

지역의료기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 센터,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지역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운영
-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CBR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나 사업 대상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대상자는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며, 지역사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중 5%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로 확보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부록 <참고 3>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정도 참조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예비 장애인)
- * 모든 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게 보건소 CBR사업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의뢰서」, 체계와 「개인정보 참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갖추어야 함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사업 대상자 이관 기준

-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제외
-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비장애인은 타 사업으로 이관
 - ※ 발달장애인은 필요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 및 연계
 - ※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황은 부록 <참고 12> 기관별 연락처 참조

다 대상자 군 분류 기준

- 장애인 대상 측정도구 평가를 입력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를 하되,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 시 군 분류 조정 가능
 - ※ 부록 <서식 5> 기능평가 및 <서식 6> 삶의 질 평가 활용

대상자 군 분류 기준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 기준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 기준	기능평가(MBI) 49점 이하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미만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질(EQ-5D) 0.660점 이상	기능평가(MBI) 75점 이상
퇴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달성자는 정기관리군으로 전환 • 미방문 기간 총 2년 초과 시 • 전출, 사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달성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전환 • 미방문 기기 총 2년 초과 시 • 전출, 사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종료 시 • 전출, 사망 시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정기적	비정기적
평가 횟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II	재활기록지 I

라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군별 필수 서비스는 주장애진료와 함께 총체적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CBR사업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
 - 지역센터가 지정된 지역의 보건소 CBR사업은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를 운영하되, '20년도 지정된 지역센터(부산, 인천, 경기, 제주)의 보건소는 '21.1월부터 대상군별 필수 서비스 운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는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필수·선택 서비스 및 세부프로그램 종류, 횟수 등을 조정 가능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대상자 중 지체(척수)·뇌병변 장애유형인 집중·정기관리군을 주대상으로 함
- 단, 자기역량지원군은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제공 가능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 목적 : 퇴원 이후에 처음 겪는 장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 주요내용 : 건강관리, 재활훈련,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임
 - 나를 이해하기,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 대상자 : 재활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예비장애인)
- 운영기간 : 총 8회(최소 4회)
- 운영시간 : 1시간 이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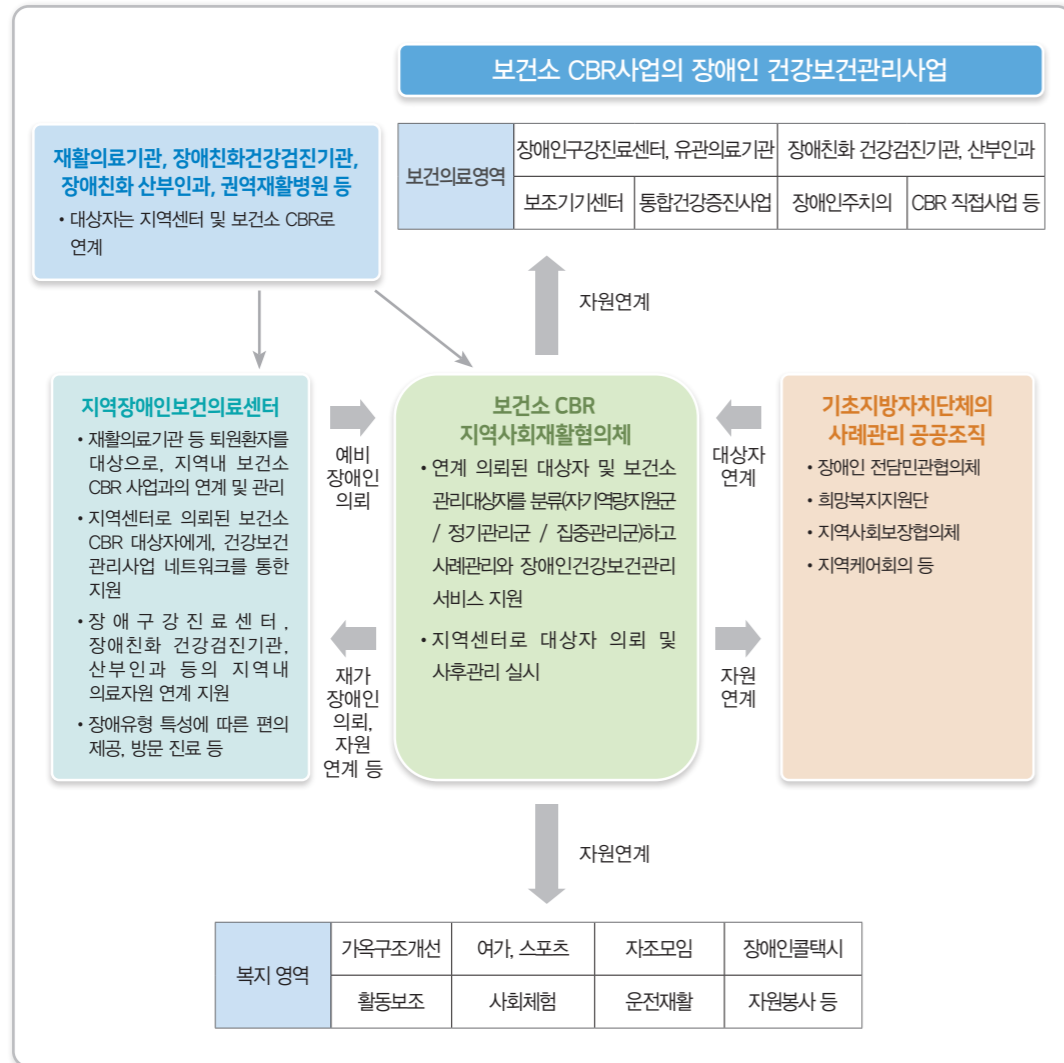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분류 ●

서비스 구분	군 분류		세부 프로그램(예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① 건강관리 서비스	필수	선택	① 배뇨·배변관리 ② 욕창·피부관리 ③ 영양관리 ④ 구강관리 ⑤ 통증관리 ⑥ 연하관리 ⑦ 호흡관리 ⑧ 만성질환관리 ⑨ 기타
② 재활훈련 서비스	필수	선택	① 재활운동교육 ② 일상생활동작훈련 ③ 관절구축예방교육 ④ 2차장애예방교육 ⑤ 생활안전교육 ⑥ 기타
③ 사회참여 서비스	선택	선택	① 외출/나들이/체험 ② 동료상담/자조모임 ③ 스포츠/레크레이션 ④ 가족소모임 ⑤ 기타
④ 자원연계 서비스	필수	선택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 의료기관과 연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 자활센터와 연계 ⑥ 장애인단체와 연계 ⑦ 행정기관과 연계 ⑧ 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 장애인 운전 지원 ⑪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 건강검진 지원 ⑭ 기타
⑤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필수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 기타
⑥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① 프로그램 소개 ② 나를 이해하기 ③ 일상생활 동작관리 ④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⑤ 건강관리 운동 ⑥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⑦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⑧ 마무리

※ 부록 <참고 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참조

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제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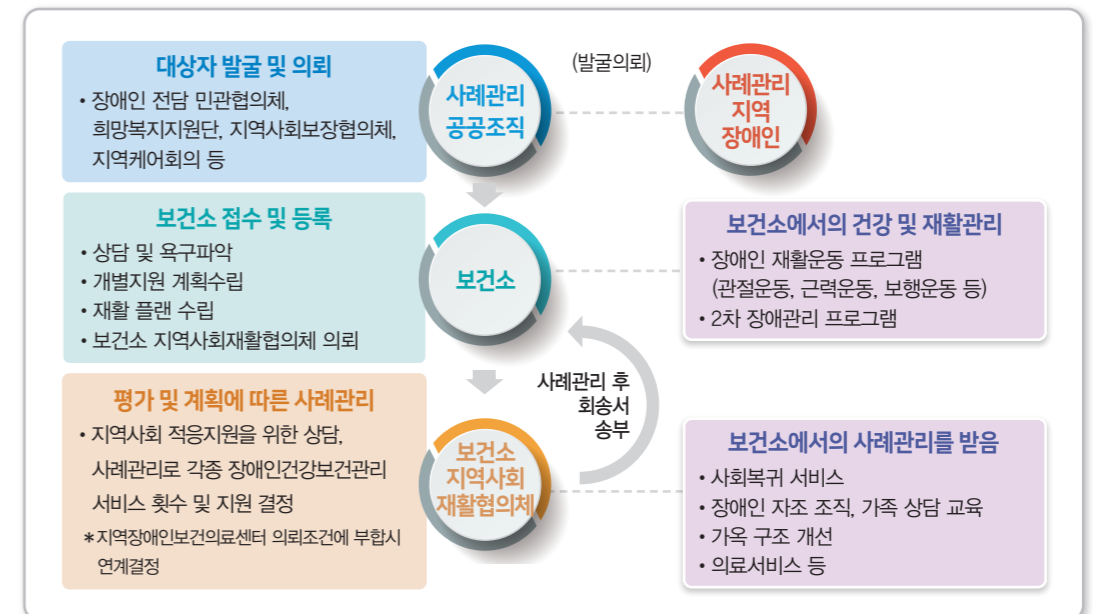
1)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과정



2) 의료기관에서 연계하는 장애인(예비장애인)의 경우



3) 지역사회 장애인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4) 사업 대상자 관리체계

과정	내용				
대상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공공조직을 통한 장애인 확보 				
대상자 등록 및 군 분류	<table border="1"> <tr> <td>대상자 등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td> </tr> <tr> <td>군 분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3개 군) 장애인 측정도구 기능평가(MBI), 삶의 질(EQ-5D)을 측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 ※ 필요시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군 분류 조정 가능 </td> </tr> </table>	대상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군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3개 군) 장애인 측정도구 기능평가(MBI), 삶의 질(EQ-5D)을 측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 ※ 필요시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군 분류 조정 가능
대상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된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 및 관리에 동의한 경우 				
군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3개 군) 장애인 측정도구 기능평가(MBI), 삶의 질(EQ-5D)을 측정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 ※ 필요시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군 분류 조정 가능 				
초기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상담 및 재활사정(기능평가 및 삶의 질 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 부록 <서식 4> 재활기록지(Ⅰ,Ⅱ) 활용 자기역량지원군 : 부록 <서식 4> 재활기록지(Ⅰ) 활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재활 요구도 파악 				
서비스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재활 요구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별 장애상태별 적절한 서비스 연계·제공 전문인력이 판단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조정 가능 				
재평가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서비스 제공 후 적절한 평가(만족도, 기능평가 등) 실시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는 군 재분류 시행 미방문 기간 2년 초과, 전출, 사망 시 퇴록 처리 				

바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1) 상담 목적

-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은 초기면접부터 종결까지 퇴원과정과 퇴원직후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로 정보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직업 재활이나 진료, 건강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함

2) 상담 대상자

- 병·의원에 입원한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3) 상담 절차 및 방법

- (상담절차) 대상자 접수확인→대상자 정보수집→상담계획 및 안내→초기상담→과정상담→종결상담
 - ※ 초기상담 이후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는 과정상담 및 종결상담 생략 가능
- (상담장소) 병·의원, 가정
- (사용매체) 직접 방문, 전화, 영상통화 등

◎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흐름도 ◎

과정	내용	기간(예시)
대상자 접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복기재활병원 등 발송된 서비스 의뢰서 확인 	입원기간 내
대상자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뢰목록 내 우선순위 선정 서비스이력 등 타기관의 자료수집 	입원기간 내
상담계획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일정 및 내용 계획·안내 	입원기간 내
초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상담 실시 후 관련 시스템에 기록 ※ 부록 <서식 3>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활용 상담결과 공유(가족, 연계기관 등) 	입원기간 내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실시 대상자는 과정 및 종결상담 생략 가능 	퇴원 후
과정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상담 실시 후 관련 시스템에 기록 ※ 부록 <서식 2> 상담기록지 활용 상담결과 공유(가족, 연계기관 등) 	퇴원 후 2일 이내
종결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결상담 실시 후 관련 시스템에 기록 ※ 부록 <서식 2> 상담기록지 활용 상담결과 공유(가족, 연계기관 등) 	퇴원 후 15일 이내

사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1) 사례관리 개념

-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는 보건의료관련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함

2) 사례관리 목표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례관리 대상자

- 중증도가 심하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순 의뢰 및 서비스 제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전체가 아닌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선정

❖ 타 부서(기관)으로 대상자 의뢰 기준

- 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 기준
 - 재활욕구 및 보건의료관련 복합적 요구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최종중 집중관리대상자* 인 경우
 - * 주된 장애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기타 질병으로 긴급입원 및 검사 등 보건의료적 복합문제를 가진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최종중 집중관리대상자를 위한 사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연계 및 기술 지원
- ②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기준
 - 대상자 상담 및 평가 시 건강관련 문제 이외에 폭력 등 안전문제, 가족 간 갈등, 경제적 문제, 법률 및 권익보장에 관한 문제 등 복지관련 복합적 문제가 있어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체적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문을 지원
 - ※ 부록 <참고 8> 희망복지지원단 지침 관련자료 참조
- ③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뢰 기준
 - 재가 장애인 중 방문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부서로 의뢰 및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1년 방문건강관리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 부록 <참고 9>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참조

4) 사례회의 운영

- 분기별 1회(대상자 선정, 종결 시 필수로 진행하되, 사례관리 수행 중 필요시 수시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공공기관은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 지원 운영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 정보 공유
- 동원 가능한 자원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이 연계할 자원을 함께 선택
-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을 개발할 것인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의뢰할 것인지, 제외대상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 ※ 하나의 결론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경우, 2가지 이상의 안건으로 재회의를 소집
- 사례회의 정리 및 차후 일정 조율

5) 서비스 점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과정상의 어려움 파악, 서비스 제공 내용, 대기기간 등 파악하여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 ※ 부록 <서식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상담지 및 점검지 활용

6) 서비스 종결

-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및 사례관리 목표가 달성된 경우 종결
- 대상자의 여건에 의한 종결(타 시군구 전출, 거절이나 포기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
- 미종결 경우 필요 시 사례회의 재실시

7) 사후관리

- 서비스 종료 6개월 후 추후관리 실시(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관리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절차 ●

순서	내용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가 심하고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 기관 단순 의뢰 및 서비스 제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전체가 아닌 담당인력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선정
건강보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시 대상자의 욕구 및 환경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례회의 안건 선정
사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선정 등 전문적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방안으로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며, 회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과제, 서비스 제공 내용, 지역 내 자원 연계방안 등 논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 여러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주관기관이 총괄적으로 서비스 제공시기, 방법 등 조정
서비스 제공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과정상의 어려움 파악, 서비스 제공 내용, 대기기간 등 파악하여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및 사례관리 목표가 달성된 경우 종결 • 대상자 여건에 의한 종결(타 시군구 전출, 거절이나 포기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미종결 경우 필요 시 사례회의 재실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종료 6개월 후 추후관리 실시(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관리방법 : 방문, 전화, 우편 등

Chapter 0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1) 목적

-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2) 주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대상

- 신규종사자(실무기본과정) : 근무기간 18개월 이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및 보건·복지인력
- 기존종사자(실무심화과정) : 실무기본과정 이수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및 보건·복지인력

4) 과정별 개요 (※ 일정은 별도 공문 통보)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021년도 교육 전 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관련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743(2020. 6. 29)호
-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일부 과정 대면 교육 전환 가능

구분	실무기본과정	실무심화과정
교육목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기술습득	지역사회중심재활 관련 종사자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교육대상	• 근무 경력 18개월 이내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관련 종사자	• 실무기본과정 이수자 중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종사자 - 각 전문분야별 면허(자격)소지자
교육시기	• 2월 ~ 11월	
교육시간	• 온라인 교육* - 11차시 / 확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5시간 / 예정	• 온라인 교육* - 4차시, 5차시, 8차시 /예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자체) - 1일 과정(5시간), 2일 과정(8시간) /예정
교육내용	• 온라인교육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이해 • 온라인 실시간 교육 - CBR사업담당자 장애인건강권교육	• 지역사회일상생활관리 • 지역사회장애인 감염병예방관리 • 장애인심리지원과 상담 • 재활사업대상자 사례관리 등
운영주체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온라인 교육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플랫폼 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중앙교육 14시간을 인정하되, 신규종사자 경우 기 사업의 의무교육 이수

※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 지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사회복지분야 포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앙교육으로 인정

Chapter 05 행정사항

가 주요 일정

시기	수행내용	해당기관
'20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21년 1월	사업계획 제출	지자체
'21년 1~12월	사업운영, 자체평가, 모니터링 및 교육	지자체
'21년 1월	하반기 실적보고('20년 7~12월 실적)	지자체
'21년 6월	우수기관 및 사업유공자, 우수프로그램 사례 선정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1년 7월	상반기 실적보고('21년 1~6월 실적)	지자체
'21년 10월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연수과정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1년 11월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 성과대회 개최 (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1년 12월	사업 만족도 조사('21년 1~12월)	지자체
'22년 1월	하반기 실적보고('21년 7~12월 실적)	지자체

※ 주요 일정은 변동 가능

나 성과 평가

- (목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가 구축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사업 차이를 반영하고, 지역 간의 사업 내실화를 통한 평균 상향 운영
- (평가결과 반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장관표창 등 포상 지원(성과 평가 결과 활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성과지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서울, 대전, 강원, 전북, 경남)과 그 외 지역은 별도 구분 평가
 - 멘토보건소는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 ※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산식은 별도 공문 통보
- (실적기간) 2020. 1. 1.~12. 31.까지
- (보고방식) 공문에 따른 수기 제출
- (보고기한) 2021. 5~7월(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운영점검 지표 I	운영점검 지표 II	운영점검 지표 III
해당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172개소)	서울, 대전, 강원, 전북, 경남 (82개소)	지역 내 멘토보건소 (16개소)
지표	총 10항목 (정성지표 5항목, 정량지표 5항목)	총 13항목 (정성지표 8항목, 정량지표 5항목)	총 2항목 (정량지표 1항목, 정성지표 1항목)
점수	총점 100점 (추가점수 2점)	총점 105점 (추가점수 2점)	(추가점수 2점)

※ 최종 순위 집계 시 운영점검 지표 II는 100점으로 환산 처리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구분	실적기간	보고방식	해당기관	제출기한
재활사업 및 대상자관리	연중	PHIS 입력	보건소	연중
반기보고	상반기	'21.1.1.~6.30. 공문에 따른 PHIS 입력 실적 확인 후 공문제출	보건소 시·도	'21년 7월
	하반기	'21.7.1.~12.31. 공문에 따른 PHIS 입력 실적 확인 후 공문제출	보건소 시·도	
만족도 조사	'21.1.1.~11.30.	공문에 따른 PHIS 입력	보건소	'21년 12월

※ PHIS 등록 시 유의사항

- 재활사업 및 대상자 관리 : 재활기록지 I, II 및 재활서비스 등 입력
 - ※ 군 분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를 퇴록 처리 후 재등록하도록 함
- 사업반기보고 : 지역사회 총 인구 수 및 등록장애인 수 등 수기실적 입력
 - 지역사회중심재활 - [DID]현황 - [DID080]반기보고 수기실적입력 - '지역사회 총 인구 수',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수' 수기 입력
- 사업만족도조사
 - 지역사회중심재활 - [DIA]대상자관리 - [DIA021]만족도조사 관리 - 만족도조사 입력 및 서식출력
 - 지역사회중심재활 - [DID]현황 - [DID070]만족도조사 입력대상-세부항목 선택 - 관리자엑셀출력 - 만족도조사 입력 목록 확인
 - ※ PHIS 사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입력

라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일원화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부록 <서식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활용
 - ※ 개인정보 처리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 집행

-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인건비 지급기준 포함)에 따름

※ 참고 항목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4. 운영수당
여비	1.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소모품	11. 프로그램 재료비
일반보상금	1. 사회보장적수혜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인건비	



부록

참고

1.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유형 예시
2.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정도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의소 현황
5.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6. 개인정보 보호 안내
7. 유용한 평가도구 예시
8.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9.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10.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12. 기관별 연락처

참고 1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유형 예시

구분	내용	횟수	대상범위	방법	예산활용	연계
조기적응 프로그램	나를 이해하기,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하기, 건강관리 운동,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등	4~8회	개인 그룹	내소 방문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정신보건센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운동, 통증관리, 기능평가 등	연중	개인 그룹	내소 방문	여비, 홍보비, 의료 및 구료비	대학(물리/작업치료과), 재활병원
장애인 사회참여	외출/나들이/체험, 스포츠/레크레이션, 장애별 자조모임, 동료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소모임 등	8~10회	개인 그룹	내소	강사비, 홍보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관련기관
자원연계	의료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행정기관,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단체, 자원봉사자 (활동보조) 등 연계	연중	개인	전화 방문 내소	-	유관기관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	가옥진단, 안전바, 문턱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자별 지속관리	개인	방문	여비, 홍보비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의 의뢰 대상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방문재활로 연계 그 외 통건사업 연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계서비스 기록지 사용	대상자별 횟수조절	개인 그룹	내소 방문	강사비, 행사실비, 보상금, 사무관리비의료 및 구료비	금연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교육 및 훈련	자가관리교육, 만성질환교육, 뇌졸중재발방지, 낙상/화상 예방, 욕창관리,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2~4회	개인 그룹	내소 방문	강사비, 사무관리비	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립재활원 교육홍보과
자기역량	자가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렛 제공	연중	개인 그룹	내소	홍보비	필요 시

참고 2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7.1.,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12.31., 타법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0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4.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의료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p> <p>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 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p> <p>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능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 2장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p> <p>제6 조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p> <p>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점진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p>	<p>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사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공단으로부터 사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을 요청받은 대행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사실 기준에 적합하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별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검진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사실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p>	
<p>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연구소 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 보건연구소 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지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정보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장애인 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장애인 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p>② 보건복지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p>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상담·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p>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장애(主障礙)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인내</p>	<p>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p>
<p>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중증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중증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p>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p> <p>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②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기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평가 2.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개선 3. 그 밖에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담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기이atria인의 개발 및 보급 		<p>제13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할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 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할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할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 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p> <p>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p> <p>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p> <p>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증상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에 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21조 (장애인 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의료센터, 지역장애인의료센터(이하 "장애인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장애인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의료센터, 지역장애인의료센터, 장애인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5장 보칙</p> <p>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9. 6. 4.] [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6. 4.>]</p>	
	<p>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중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6. 4.>]</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제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개정 2019. 6. 4.>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과 방문진료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무</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②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일부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p>	<p>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46호, 2019. 7. 1, 일부개정]</p>
<p>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6. 4.)]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6. 4.)]</p>	

1)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의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현황

※ 2021년 멘토보건소 연락처는 부록 <참고 12> 기관별 연락처 참조

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서울, 대전, 강원, 전북, 경남, 부산, 인천, 경기, 제주)의 보건소(총 158개소)

지역	보건소	2020년 멘토보건소	2021년 멘토보건소	비고
서울특별시 (25개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관악구	관악구	-
대전광역시 (5개소)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서구	중구	변경
강원도 (18개소)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보건의료원, 홍천군, 화천군보건의료원, 횡성군	원주시	원주시	변경
전라북도 (14개소)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보건의료원,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보건의료원, 순창군보건의료원, 전주시, 정읍시, 장수군보건의료원,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변경
경상남도 (20개소)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보건의료원,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군, 창원시 마산, 창원시진해, 창원시창원,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창원시 진해 서부 보건지소	사천시	변경
부산광역시 (16개소)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진구,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	변경
인천광역시 (10개소)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용진군, 중구	계양구	계양구	-
경기도 (44개소)	가평군,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남양주풍양,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단원, 안산시상록수, 안성시, 안양시동안, 안양시만안,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보건의료원, 오산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송탄, 평택시평택,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파주시	파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6개소)	서귀포시동부, 서귀포시서귀포, 서귀포시서부, 제주시동부, 제주시서부, 제주시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제주	-

나. 그 외 지역의 보건소(총 96개소)

-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지역

지역	보건소	2019년 멘토보건소	2020년 멘토보건소	비고
대구광역시 (8개소)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동구	동구	-
광주광역시 (5개소)	동구,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북구두암 보건지소	북구두암 보건지소	-
울산광역시 (5개소)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울주군	-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세종시	-	-	-
충청북도 (14개소)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상당, 청주시서원, 청주시청원, 청주시흥덕, 충주시	옥천군	보은군	변경
충청남도 (16개소)	계룡시,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청양군 보건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홍성군	예산군	예산군	-
전라남도 (22개소)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보건의료원, 광양시, 구례군보건의료원,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보건의료원,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목포시	목포시	-
경상북도 (25개소)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구미, 구미시선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보건의료원,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보건의료원, 칠곡군, 포항시남구, 포항시북구	구미시 구미	구미시 구미	-

OO시·군·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의체는 OO시·군·구 내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한 재활을 통해 독립적 일상생활의 능력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체에 관한 운영방법은 각 참여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추진사항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모임을 통한 참여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 할 수 있다.

1. 각 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의 개선요구 및 협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정기회의 개최 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은 각 참여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구성한다.
4. 위원은 협의체 소속 기관 당 2명 이하로 한다.
5. 협의체 구성은 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의체의 회의는 구성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장은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안내서」 참조

개인정보 보호 안내

1. 기본원칙

-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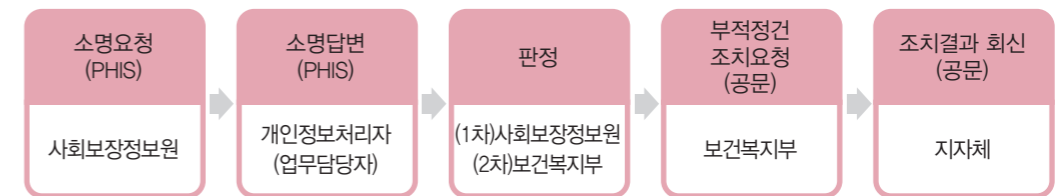
2. 개인정보 보호 필수조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3. 지역보건정보시스템(PHIS)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개요
 -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업무처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지역보건정보시스템(PHIS)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업무처리 절차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 발생 시 PHIS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요청 받은 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소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PHIS에 등록
 - 판정 결과 부적정인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공문 회신



-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처리 수행

참고 7 **유용한 평가도구 예시**

※ 홈페이지(www.rehabmeasures.org) 참조

분류	도구형식	도구형식	항목수	영역	채점
균형감	10m walk test	10m walk test	12m 보행시 2m 가속구간과 감속구간을 뺀 10m 구간을 보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		
			뇌졸중 환자의 보행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급내상관계수(ICC)=0.93(Salbach 등, 2001)		
	Timed Up&Go Test	Timed Up&Go Test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 3m 거리를 걸어서 다시 되돌아와 의자에 앉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측정	기능적 이동성, 동적균형능력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급내상관계수(ICC)=0.95(Ng&Hui-Chan,2005)	
한국어판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	균형 자신감 척도	16	- 낮은 위험성을 가진 항목	- 11점 Likert 척도 (0=전혀 자신없다 ~100=완전히 자신있다)	
			ICF 개념에 맞는 낙상에 대한 예측 도구 • 본 척도의 출처: 장숙량외, 한국어판 낙상효능 척도와 활동 특이적 균형 자신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노인병: 제7권 제4호, 2003.		
한국판 버그 균형척도	버그 균형 척도	14	- 앉기(1) - 서기(8) - 자세변화(4)	- 5점 Likert 척도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도구 56점 만점에서 44점 이하이면 낙상 위험이 크다고 평가 • 원 척도의 출처: Berg, Katherine; Wood-Dauphinée, Sharon; Williams, JI; Gayton, David (1989). Physiotherapy Canada, 41 (6): 304-311.		
삶의 질	사회참여 척도	참여척도	18	- 지식의 학습과 적용 - 일반적인 임무와 요구 - 의사소통 - 이동 - 자기관리 - 가정생활 -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 주요생활영역 - 공동체 - 사회 및 시민생활	- 4점 Likert 척도

분류	도구형식	도구형식	항목수	영역	채점
삶의 질	사회참여 척도				본 척도는 Brakel 등(2006)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 박재현(2012)이 연구의 활용을 위하여 단순한 4점 Likert 척도로 수정 • 본 척도의 출처: 박재현(2012).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인 척도 개발 및 적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학박사학위 논문. 대구 • 원 척도의 출처: Brakel,W. H.,anderson, A. M., Mutatkarr, K., Bakirtzief, Z., Nicholls, P. G., Raju, M. S., & Pattanaykrobert, K. (2006). The participation scale : Measuring a key concepin public health.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8, 193-203.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척도		10	- 긍정적 자아존중감 (1, 2, 4, 6, 7) - 부정적 자아존중감 (3, 5, 8, 9, 10)	- 4점 Likert 척도 -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 -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 -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본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 • 본 척도의 출처: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서울.
대처 및 통제감	사회적지지 척도		25	- 정서적 지지 - 정보적 지지 - 물질적 지지 - 평가적 지지	-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
					본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 • 본 척도의 출처: 박재현(2012).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인 척도 개발 및 적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학박사학위 논문. 대구. • 원 척도의 출처: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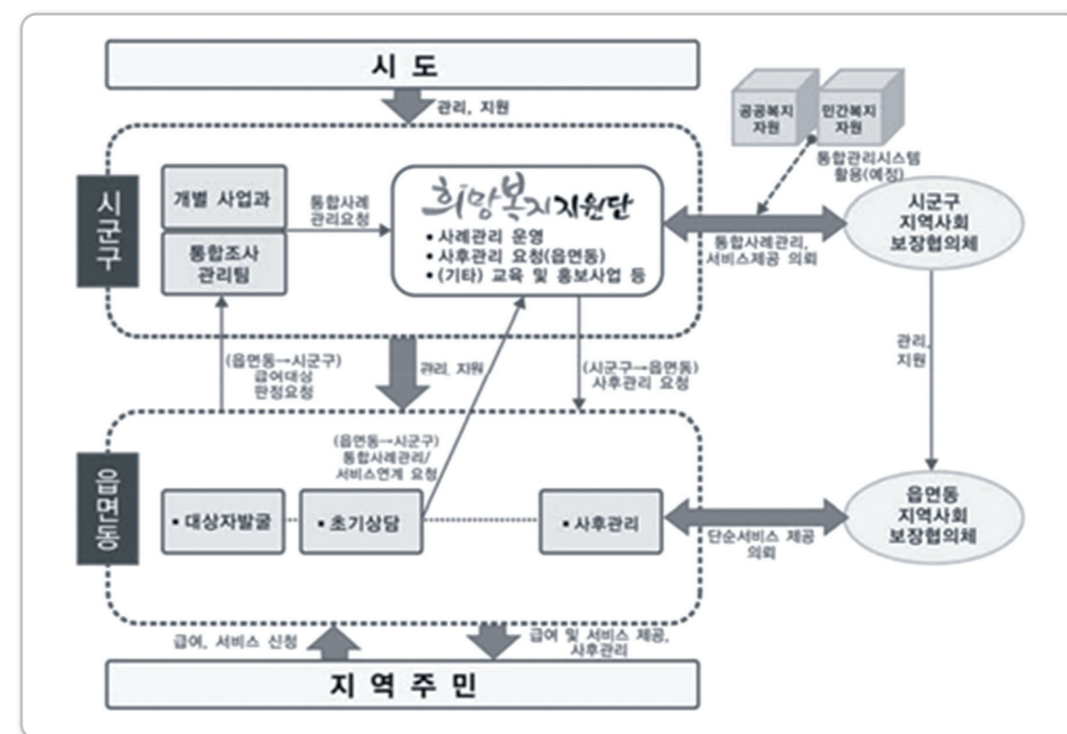
분류	도구형식	도구형식	항목수	영역	채점
대처 및 통제감	목표조정 척도	목표조정 척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탈개입(4) · 긍정응답(2) · 부정응답(2) - 목표재개입(6) ·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 · 새로운 목표에 헌신하는 것 · 새로운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것 	-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p>본 척도는 Wrosch, Scheier, Miller, Schulz & Carver(2003)가 개발한 것을 정정숙(2013)이 번안</p> <p>• 본 척도의 출처 : 정정숙(2013). 척수장애인의 우울과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단기심리상담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p>			
기타	희망척도	희망척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점 Likert 척도 - 허위문항(3, 5, 7, 11)을 제외하고 계산되며 주도 사고, 경로사고가 모두 최저 4점에서 16점 -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 	- 4점 Likert 척도 - 허위문항(3, 5, 7, 11)을 제외하고 계산되며 주도 사고, 경로사고가 모두 최저 4점에서 16점 -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
<p>본 척도는 Snyder 등(1991)이 개발하고, 최윤희, 이희경과 이동귀(2008)가 번안</p> <p>• 본 척도의 출처 : 황혜민(2013).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학위 논문. 서울.</p>					

참고 8

희망복지지원단 안내

■ 희망복지지원단

- 목표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 대응



- 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주민센터·희망복지지원단)
- ② (희망복지지원단) 심층요구조사, 통합사례회의 실시 및 종합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읍·면·동 주민센터와 방문형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지원체계 연계협력
- ③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④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

타. 보건소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방문건강관리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사례관리) 및 중독통합지원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 자살예방센터 근무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전담인력(장애인건강보건 사례관리)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분을 지원
- 타 사례관리 사업(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의뢰
 - 대상자 기준 : '등록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예비장애인)'
 - 의뢰 기준 : 대상자의 의료·건강보건 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 의뢰 절차 : 선정단계(읍·면·동 초기상담 이후 등)에서 대상자의 의뢰사유 발생 시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대상자 의뢰
-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필요시 의뢰를 받아 유기적 협력체계 수행

※ 출처 : 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참고 9 방문건강관리 지침 관련자료

▣ 장애인 재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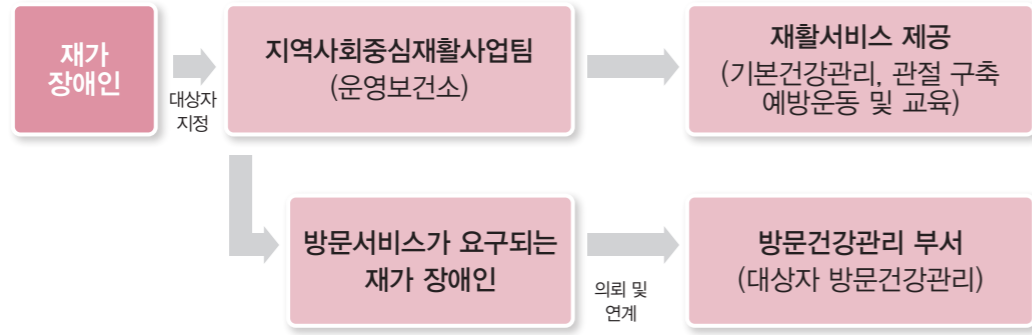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국정과제 50.(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으로 2017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

- 목적
 - 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 대상 : 기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	☑	☐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신체활동 교육
 - 기본 건강관리 :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관리, 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연계서비스 내용
 - (보건소 내)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연계 등
 - (보건소 외)
 -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연계 체계 ●



※ 출처 :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침

참고 10 전국 보조기기센터 연계

1.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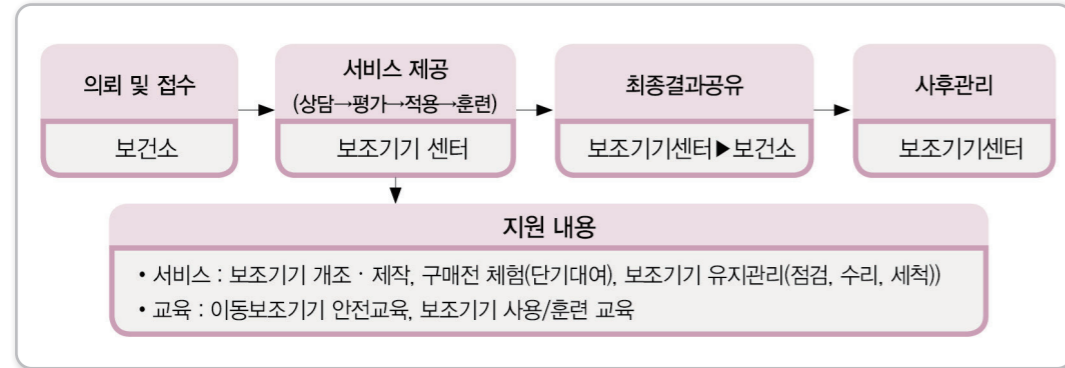
- 보조기기 서비스 : 보조기기 9개 영역에 따른 개조·제작, 구매전 체험(단기대여), 유지관리(점검, 수리, 세척) 서비스를 제공
- 보조기기 교육 : 안전교육, 보조기기 사용/훈련 교육
- 보조기기 정보제공(검색) :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 '보조기기검색' 활용
보조기기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기기 전시'
- 보조기기 서비스 영역



● 보조기기 서비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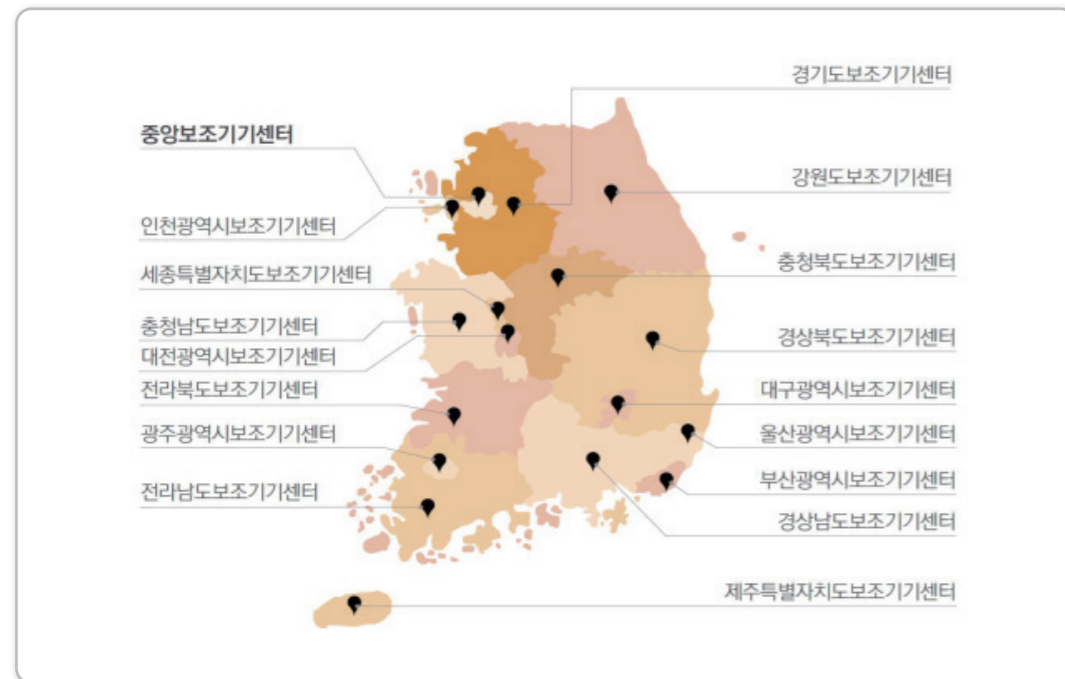
2. 수행절차



※ 단, 해당 서비스는 보조기기서비스센터 설치지역 범위 내, 지원가능

3. 보조기기센터 설치현황

(2020년 12월 기준)



※ 콜센터 대표번호 1670-5529 이용 시 지역 보조기기센터로 직접 연결

4. 공적급여 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4개부처 8개 사업)

소관 부처	사업명	사용명칭	신청 대상자	서비스 방법	지급 품목	
보건 복지부	장애인 자립 기반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지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목욕의자, 이동변기, 기립훈련기, 독서확대기, 시각신호표시기 등
	기초 의료 보장과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의료급여)	보장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대여	의지보조기 및 수·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매트리스 등(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 대여 가능)
	보험 급여과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건강보험급여)	보장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및 대여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등 구입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요양 보험 제도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복지용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지원 및 대여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등 구입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미래 창조 과학부	정보 문화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등	지원	시각, 청각, 언어, 지체·뇌병변 정보통신보조기기
고용 노동부	산재 보상 정책과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재활 보조기기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지원	건강보험급여품목과 산재보험별 급여품목
	장애인 고용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보조 공학기기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직업 훈련생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및 대여	1. 임대(상용기기) • 1인당 1,000만원(중증1,500만원), 사업장당 총 2억원 이내 2. 지원(상용, 맞춤형) • 300만원(중증500만원) 사업장당 총 5천만원 이내

소관 부처	사업명	사용명칭	신청 대상자	서비스 방법	지급 품목
보훈처	보훈 의료과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	보철구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 이자로서 신체장애인	지원 의지, 보조기, 휠체어 등 • 보조기기 상한액까지 무상지원
교육부	특수 교육 정책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보조 공학기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내 대여

참고 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

〈자료검색 방법〉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http://www.nrc.go.kr>)에서 찾기 ⇨ 홈 ⇨ 교육지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 검색
-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문의 또는 공문요청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활동사례집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수행기관 소개, 활동사례 소개	사례집	2021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를 위한 면접기술 사례관리의 이해, 기초 면접기술, 초기 면접단계의 과업과 면접지침	책자	2021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갱년기 건강예보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갱년기 보내기 갱년기 증상, 갱년기 건강관리 등	동영상	2020	유튜브 검색
		책자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알림마당> 교육지원자료실>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뇌졸중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전체동작 포스터, 구간별 동작 포스터 2종(QR코드를 삽입하여 동영상과 연동)	포스터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알림마당> 교육지원자료실>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똑똑~ 장애인건강권 이해하기 장애인건강권법 알기, 장애범주와 유형별 이해, 유형별·상황별 에티켓	책자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알림마당> 교육지원자료실>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북(담당자용, 저시력자용) 만성질환에 따른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마음 건강 관리, 안전관리 등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알림마당> 교육지원자료실>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장애 여성 90명의 경험,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정서적 우려, 임신과 장애의 상호작용, 장애 부모의 육아, 보건의료 서비스 활용 등	책자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주요사업안내>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상담 매뉴얼 및 환자교육자료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 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1편 장애관리, 2편 생활습관, 3편 만성질환 및 예방, 4편 부록) 및 환자교육용 자료	책자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소식알림>공지사항> 장애인 건강 주치의 상담 매뉴얼 및 환자 교육자료 출간 (등록일:2020-09-15)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수검자용 건강검진 안내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주요사업안내>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 수검자(장애인)용 메뉴>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용방법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종사자용 매뉴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방법 및 검진 매뉴얼	가이드북	2020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main.do) 주요사업안내> 장애친화건강검진 사업>검진기관용 메뉴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가이드북(대상자용, 담당자용) 나를 이해하기, 일상생활 동작관리,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건강관리 운동,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맞춤형 서비스 안내 등	가이드북	2019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40주의 우주 부모가 된다는 것, 피임·임신·출산, 장애 유형별 관리, 양육, 기타 유용한 정보 등	책자	2019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나의 몸 이해하기, 내 몸 돌보기, 건강 검진, 성생활, 성 건강, 가족계획, 임신, 진통과 출산, 아기 돌보기 등	책자	2019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빙방곡곡 CBR이야기 2018 2017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례모음	사례집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2018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가이드 뇌병변장애인 건강한 식생활, 배뇨, 배변관리, 지팡이 사용, 낙상 예방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생활 유지 가이드	가이드북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의 구강관리 구강질환, 구강관리 원칙, 장애유형별 구강상태 특징과 교육	리플릿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의 비만관리 비만 위험성, 비만관리를 위한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리플릿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힘들고 우울한가요? 장애인의 우울관리 우울이란, 우울할 때 도움요청방법 등	리플릿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도움이 필요하세요? 장애인 가족의 우울 및 소진관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도움요청방법 등	리플릿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나에게 딱 맞는 휠체어 휠체어 정의 및 분류, 나에게 맞는 휠체어, 올바른 이용, 주의사항 등	가이드북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의 의료기관 내원 시 중요 POINT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포인트, 장애인과 첫 대면시 중요포인트 등	가이드북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용 안내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	가이드북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용 안내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	가이드북	201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1. 사업개요
2. 사업 운영관리 체계
3. 사업 내용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5. 행정사항
[부록] 참고
[부록] 서식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과제지향 보행프로그램 - 지역사회 뇌졸중장애인의 보행이란 - 보행의 평가 - 보행촉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 과제지향적 보행프로그램	가이드북	201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과제지향 보행프로그램 - 보행촉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 과제지향적 보행프로그램	포스터	201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방방곡곡 CBR이야기 2017 201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례모음	사례집	201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사람 그리고 희망 - 2016 보조기기 공모전 우수작품 모음집 - 보조기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 보조기기 수기 공모전 수상 및 우수작	사례집	201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함께해요 과제지향순환식 운동 프로그램 - 지역사회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 쉽고 자세한 설명 - 동작을 직접 시연	가이드북	201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장애인 건강권법의 이해 -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배경과 이념 - 장애와 건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향후 계획	사이버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https://cyber.kohi.or.kr)
	과제지향 순환식 운동프로그램 지역사회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동작을 시연하며 쉽고 자세히 설명	동영상	2016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나에게 딱 맞는 휠체어 휠체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2016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휠체어 & 스쿠터 알고 이용하면 안전해요 이동보조기기인 휠체어와 스쿠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동영상	2016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방방곡곡 CBR이야기 2016 2015년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사례모음	사례집	2016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프로그램 홍보자료	홍보 동영상	2015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지역사회중심재활 CBR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이용방법,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대상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으로 제작	리플릿	2015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1. 사업개요
2. 사업운영관리체계
3. 사업 내용
4.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5. 행정사항
[부록] 참고
[부록] 서식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가이드 보건의료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낙상, 화상, 투약오류로부터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가이드 하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또한 안전생활수칙을 대상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공	가이드북 리플릿	2015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방방곡곡 CBR 이야기 2014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우수프로그램을 사례집으로 발간함. 정보와 기술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참고하기 위함	가이드북	2015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활기찬 건강체조 뇌졸중장애인 및 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강체조로 동작이 단순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포스터의 경우는 대상자들이 가정에 붙여놓고 동작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제작함	포스터 및 CD	2015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한 손에 꼭 쥐어주는 지역사회중심재활 2013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우수프로그램을 사례집으로 발간함. 정보와 기술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참고하기 위함	가이드북	2014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장애인의 심리·상담 기본 마스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치료시 대처 및 상담에 적용하기 위함	가이드북	2014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배뇨관리의 이해 신장과 방광의 역할, 장애인 방광 관리의 필요성, 관리방법 및 검사 방법과 청결 간헐적 도뇨법(CIC), 유치 도뇨관 관리에 대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및 CD	2014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건강생활 365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린 후 신경-근육운동 단위들의 기능 퇴화로 겪게 되는 증상에 대한 관리방법, 일상생활수칙, 운동 등 후소아마비 증후군에 대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및 CD	2013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지체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중 관리 프로그램 book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중관리 (영양/운동) 프로그램 구성, 식사/운동일기 사용법, 운동전 확인사항 및 운동시 주의사항, 체중관리 weekly 프로그램(8주 구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무책자	책자	2013	공문요청
	삼킴장애 관리 삼킴장애 정의, 진단, 재활치료, 점도 증진제의 이해와 사용법, 올바른 경관 영양법 및 관리 등 소아 삼킴장애 관리에 대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2013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110인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삶 증상별 통증관리, 스포츠재활, 신경 손상과 관련된 재활, 만성질환으로 인한 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까지 총 망라한 재활관련 도서	책자	2012	중앙일보헬스 미디어제작 국립재활원 일부 소장, 공문요청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방문재활의 실제 재가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가이드북(대상자 평가, 일상 생활 관리, 욕창관리, 편측무시관리, 배뇨·배변관리, 만성질환 관리)	e-book	2011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마당을 두바퀴 돌기까지 장애인 재활사례, 재활치료·건강증진·증진·지역사회참여·장애예방 프로그램 사례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실제 사례집	책자	2011	공문요청
	건강한 수면을 위한 가이드북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한 수면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북	가이드북 e-book	2010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허약노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 허약노인의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 영양관리(1~4회차) 프로그램 - 낙상예방위한 위험요인 관리 - 운동관리 프로그램	가이드북	2009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사고로 인한 장애,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장애 사례, 외상성 뇌·척수손상의 정의 및 원인, 장애예방 수칙, 국립재활원 장애예방교육 안내에 대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및 e-book	2008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표지	제목/ 내용	자료종류	발간연도	자료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북 (낙상신체기능/외부환경 평가, 낙상예방 활동 및 체조)	가이드북 및 e-book	200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배뇨·배변에 관한 모든 것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가 있는 뇌손상·척수손상 대상자가 알아야 할 것과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2007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편측무시 대상자를 위한 가이드북 뇌졸중이나 사고로 인한 뇌손상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편측무시 증상에 대한 정의, 관리 및 훈련방법에 대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2006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욕창에 관한 모든 것 욕창환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욕창을 치료하는 보호자 및 치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수록됨	가이드북 및 e-book	2005	공문요청 또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www.nrc.go.kr)

※ 국립재활원 재활교육 동영상 자료

구분	제목	제공년도	자료접속방법
장과 방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인성방광에서의 배뇨관리(1)개념과중요성 • 신경인성방광에서의 배뇨관리(2)종류와 방법 • 청결 간헐적 도뇨법 안내(남성) • 청결 간헐적 도뇨법 안내(여성) • 척추손상인을 위한 배변관리 • 청결 간헐적 도뇨법(CIC) 교육 영상 	2015	① 유튜브 검색 “국립재활원 재활교육 동영상”으로 검색 ② 네이버검색 검색창에 위 동영상 이름입력 “국립재활원 재활교육 자료실” 블로그 접속 ③ http://재활교육.kr 로그인 후 접속 동영상 SMS 발송가능
척추손상인을 위한 건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손상인을 위한 자가운동 가이드(1) 운동 효과 • 척추손상인을 위한 자가운동 가이드(2) 스트레칭 • 척추손상인을 위한 자가운동 가이드(3) 근력운동의 효과와 주의사항 • 척추손상인을 위한 자가운동 가이드(4)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 척추손상인을 위한 자가운동 가이드(5) 덤벨을 이용한 근력운동 • 척추손상인에서의 자율신경과반사증 • 욕창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정보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졸중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우울증 관리 • 뇌졸중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 체조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연하재활운동 및 주의 사항 • 구음장애 환자를 위한 구강-조음기관운동 		
낙상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 예방을 위한 자가운동 •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만성질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식 안내 • 고지혈증 안내 • 골다공증의 개념과 예방 및 치료 • 고혈압 환자의 생활요법 안내 •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 안내 •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방법 •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 		

참고 12 기관별 연락처

기관	부서 / 내용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총괄 044-202-3297
	건강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044-202-2808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총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실무 02-901-161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02-901-1656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02-901-1592
		공공재활사업 02-901-1654
		보조기기 사례관리 02-901-1953
	장애인건강사업과	보조기기 품질관리 02-901-1973
		보장구 실무 02-901-1648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02-901-1306
		장애인 건강주치의 02-901-1305
		여성장애인 지원 02-901-1306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권 교육 02-901-1304	
	장애예방안전지원과	장애인운전교육 02-901-1553
		장애체험교육 02-901-1586
	사회복지지원과	사회복귀 02-901-1897
	간호과	행정 02-901-1711
		교육 02-901-1729
물리작업치료과	사무 02-901-1808	
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PHIS)	콜센터 1566-3232
		CBR 보건소 전산 02-6360-6950
		CBR 진료소 전산 02-6360-6936
		통계(DW) 및 실적 02-6360-6949
멘토보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02-879-7407
	부산광역시	영도구보건소 051-419-4936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053-662-3260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032-430-7993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두암보건지소 062-410-8199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042-288-8165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052-204-2755

기관	부서/내용		연락처
멘토보건소	경기도	파주시보건소	031-940-5596
	강원도	홍천군보건소	033-430-4065
	충청북도	보은군보건소	043-540-5652
	충청남도	예산군보건소	041-339-6093
	전라북도	김제시보건소	063-540-2726
	전라남도	목포시보건소	061-270-4016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55
	경상남도	사천시보건소	055-831-36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8724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재활병원	02-6020-3128
	서울특별시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시립보라매병원	02-870-2071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042-338-2229
	강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강원도재활병원	033-248-7760
	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	063-859-0053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강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강원도재활병원	033-248-7760
	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	063-859-0053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대학병원	064-717-2720
장애인 건강주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주치의사업부	033-736-469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3~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사업과	02-901-1305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울	서울의료원	02-2276-7160
	대전	대청병원	1899-6075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77
	강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760-4550
	경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850-6277~78

기관	부서/내용		연락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경남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55-249-1234~6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280	
	제주	중앙병원	064-786-7282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광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511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041-550-0127	
	부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 병원	051-240-6804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전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063-250-2202	
	경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031-8005-2936	
	대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053-600-7101	
	인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가천대학교 길병원	032-460-3882	
	강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33-640-3111	
	제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064-717-1840	
	권역재활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서울, 인천, 경기	032-899-4351
		강원도재활병원	강원	033-248-7625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338-2322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 전북, 전남	062-613-9368	
영남권역재활병원		부산, 울산, 경남	055-360-4125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북, 대구	053-230-8828	
제주권역재활병원		제주	064-730-9126	
재활의료기관		서울	국립재활원	02-901-1700
	의료법인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02-3284-7777	
	청담병원		02-2104-2000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제니스병원		02-3436-8888	
	인천, 경기	국립교통재활병원	031-580-5555	
		린병원	031-8005-1300	
		휴앤유병원	031-202-0114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031-716-0007	
		로체스터병원	031-879-7575	
강원	브래덤병원	032-456-7600		
	미추홀재활전문병원	032-430-6200		
	일산중심병원	031-810-2000		
	강원도재활병원	033-248-7700		

기관	부서/내용		연락처	
재활의료기관	대전	다빈치병원	1566-9852	
	충북	청주푸른병원	1833-8114	
		씨엔씨울량병원	043-211-9090	
	충남	다우리병원	041-575-7100	
	광주, 전남	호남권역재활병원	062-613-9000	
	대구, 경북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053-715-7575	
		남산병원	053-250-1100	
	부산, 경남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051-629-8000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051-325-9700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051-366-7000	
		(재)한·호 기독교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051-363-2331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064-730-900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서울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02-2204-9970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	02-6070-9000	
서울 관악구		SRC재활병원	031-760-3622	
		SRC부설의원	02-871-3636	
서울 강동구		주몽재활의원	070-8255-0356	
부산 영도구		천성의원	051-412-4408	
대구 수성구		인제재활병원	053-752-8683	
인천 남구		인천재활의원	032-866-0102	
인천 연수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032-899-4000	
대전 유성구		성세병원	042-820-1234	
대전 유성구		대전재활전문병원	042-717-7575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033-248-7700	
충북 청주		충북재활의원	043-271-8150	
충남 보령		충남장애인사랑의원	041-932-1712	
경북 안동		경북재활병원	054-858-8410	
경남 창원		홍익재활병원	055-286-1518	
경남 거제		마하재활병원	055-633-3000	
제주		제주추진강의원	064-745-8800	
전국 보조기기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국립재활원	02-901-1959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92~6	

기관	부서/내용		연락처	
전국 보조기기센터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053-650-8340~3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노들담수녀회 노들담복지관	032-540-8945~8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062-613-9365~6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042-338-2980~2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2-257-854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4-715-5320
	경기도보조기기센터	북부센터	070-7114-0371~3	
		남부센터	031-295-7363~4	
	강원도보조기기센터	강원도재활병원	033-248-7751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충북재활의원 3층	070-7209-3260~2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041-415-2861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전주대학교	063-220-3000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061-740-1501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053-850-5801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055-237-8242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64-723-999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홈페이지(비로소) :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범죄신고 및 권리구제 상담전화(☎1522-2882)

구분	전화번호	주소
중앙	02)3433-07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서울특별시	02)2135-3635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부산광역시	051)714-736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대구광역시	053)719-0340	대구광역시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8층
인천광역시	032)715-4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광주광역시	062)714-335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대전광역시	042)719-1085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 대전도시공사 3층
울산광역시	052)710-3154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세종특별자치시	044)414-9172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경기도	031)548-139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강원도	033)817-2357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사농동)
충청북도	043)716-21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9,110호
충청남도	041)415-121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충남타워) 7층 704호

구분	전화번호	주 소
전라북도	063)714-26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5 7층 702호
전라남도	061)802-106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경상북도	054)805-7310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경상남도	055)716-239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
제주특별자치도	064)803-3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 KT&G 제주 본부 3층

구분	지역	기관
기타연계 의료기관	서울	중앙보훈병원, 원자력병원, 서울지구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경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부산	부산보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등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등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대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평택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강원	강릉의료원, 국군강릉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국군원주병원, 정선군립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국군춘천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국군홍천병원 등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
	충남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전북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등
	전남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포항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부록

서식

1.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상담기록지
3.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4. 재활기록지 I, II
5.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6. 삶의 질 평가(EQ-5D)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8.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9.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상담지 및 점검지
10.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II 및 회송서
11. 사업 만족도 조사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소 내외의 서비스가 이뤄질 것입니다. 간단한 건강검사 후 맞춤형 교육 및 상담과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는 없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건강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필수입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관계: 본인 법정대리인
 설명자: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 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나.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 나. 건강정보 : 사업별 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가.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에 차이가 있어,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나.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제공 대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주민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3. 정보의 이용목적 : 타 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다. 전자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화 정보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 관리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질 관리
-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건강정보 : 사업별 건강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귀하는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식 2

상담기록지

상담기록지

상담일시					상담장소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내소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 상 자	성 명				주 보호 자	성 명		
	나 이					관 계		

상담목적							
상담내용							
상담결과 및 지원계획 (연계 등)							
기타사항							

연계병원 퇴원상담기록지

상담일시		의뢰 요청기관	
상담자	(서명)	의뢰일자	

기본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결혼상태	종교			
	학력	주보호자 (관계)	주보호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빌라 <input type="checkbox"/> 상가건물 <input type="checkbox"/> 원룸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험유형	<input type="checkbox"/> 국민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계층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업	사업체명	근무기간	직무내용	급여	비고(퇴직사유 등)
장애 정보	장애등록	<input type="checkbox"/> 유(<input type="checkbox"/> 심한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무(<input type="checkbox"/> 예비장애인)		장애 등록일		
	주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발달				
	부장애	장애발생 원인/시기				
가족 정보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비고(연락처 등)

건강 정보	병력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고지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병시기 :			
	복용중인 약물				
	이용의료기관				
	동반증상	<input type="checkbox"/> 실어증 <input type="checkbox"/> 삼킴장애 <input type="checkbox"/> 배뇨장애 <input type="checkbox"/> 배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조기기					
일상 생활	식사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input type="checkbox"/> 부분의존 <input type="checkbox"/> 완전의존			
	개인위생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input type="checkbox"/> 부분의존 <input type="checkbox"/> 완전의존			
	착탈의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input type="checkbox"/> 부분의존 <input type="checkbox"/> 완전의존			
	대소변처리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input type="checkbox"/> 부분의존 <input type="checkbox"/> 완전의존			
	보행	<input type="checkbox"/> 독립적 <input type="checkbox"/> 부분의존 <input type="checkbox"/> 완전의존			
대상자의 욕구 (취업/복지/교육 등)					
종합소견					
향후계획					
기타사항					

재활기록지 I

□ 일반정보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등록일자		생년월일	
퇴로일		퇴로사유	
학력		직업	(전직)
종교			(현직)
대상자 등록유형	<input type="checkbox"/> 집중관리군 <input type="checkbox"/> 정기관리군 <input type="checkbox"/> 자기역량지원군		
장애등록	<input type="checkbox"/> 유(심한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무(예비장애인)	장애 등록일	
주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뇌전증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발달		
부장애			
경제수준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상		
보험유형	<input type="checkbox"/> 국민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계층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질환			
가족사항			

재활기록지 II

□ 재활사정

발병 및 치료과정	발병년도 : 년 월 (년 개월 전)		
재활치료경험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의료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심장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		
동반 장애	<input type="checkbox"/> 실어증 <input type="checkbox"/> 경련 <input type="checkbox"/> 연하곤란 <input type="checkbox"/> 편측무시 <input type="checkbox"/> 뇌수종 <input type="checkbox"/>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배뇨장애 <input type="checkbox"/> 배변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		
통증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부위 : , 강도 : 0-1-2-3-4-5-6-7-8-9-10)		
복용중인 약물			
보조기기	보장구		
	보행기구		
	기타		
외출 (지역참여)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회수 : /) 주요활동 :		
주보호자			
가족 특이 사항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부부만 거주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정신지체(부모)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가족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외 동거가족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사항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건물 내 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유상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화장실 유형	<input type="checkbox"/> 좌변기 <input type="checkbox"/> 재래식변기 <input type="checkbox"/> 이동변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개선필요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필요부분	① 안전관리 ① 문턱 ② 미끄럼방지 ③ 손잡이 또는 안전대 ④ 기타 ② 이동관련 ① 계단 ② 문턱 ③ Bar 설치 ④ 기타 ③ 일상생활 ① 화장실 ② 부엌 ③ 거실 ④ 침실 ⑤ 기타 ④ 기타		

□ 재활사정(계속)

구분	내용			/	/
의식	① 명료 ② 혼돈 ③ 혼수				
의사 소통	① 기능(표현방법 :) ② 다소 어려움 ③ 불가능				
호흡 상태	① 정상 ② 기침 ③ 호흡곤란 ④ 기관지 삽관 ⑤ 기타 :				
영양 상태	① 양호 ② 불량(이유: 식단 부족, 삼키기 기능저하, 기타)				
연하 장애	① 있음 ② 없음				
배뇨	상태	① 정상 ② 배뇨곤란(참지못함, 잦은배뇨, 느낌없음)			
	방법	① 정상 ② 기저귀, 기스모 ③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④ 기타(자극 등)			
배변	상태	① 정상 ② 변비(회/ 일) ③ 실변(배변느낌 : 유, 무) ④ 기타:			
	방법	① 정상 ② 항문자극 ③ 관장 ④ 기타 :			
피부	위생상태	① 양호 ② 불량 ③ 욕창(상태 :)			
근력	우상지	① 정상 ② 약화 ③ 완전마비			
	좌상지	① 정상 ② 약화 ③ 완전마비			
	우하지	① 정상 ② 약화 ③ 완전마비			
	좌하지	① 정상 ② 약화 ③ 완전마비			
관절 구축	상 지	① 어깨(좌, 우) ② 팔꿈치(좌, 우) ③ 손(좌, 우)			
	하 지	① 고관절(좌, 우) ② 무릎(좌, 우) ③ 발목(좌, 우)			
운동 기능	① 와상상태(거동불능) ② 앉아있을 수 있음 ③ 침대, 휠체어 이동가능 ④ 기립가능 ⑤ 의존적 실내보행 ⑥ 독립적 실내보행 ⑦ 실외보행				
일상 생활	식 사	① 독립적 ② 부분의존 ③ 완전의존			
	개인위생	① 독립적 ② 부분의존 ③ 완전의존			
	착 탈 의	① 독립적 ② 부분의존 ③ 완전의존			
	대소변처리	① 독립적 ② 부분의존 ③ 완전의존			

□ 종합

구분	세부 프로그램(예시)		비고
주요문제			
대상자 주육구			
재활목표			
제공 서비스	① 건강관리 서비스	① 배뇨·배변관리 ⑥ 연하관리 ② 욕창·피부관리 ⑦ 호흡관리 ③ 영양관리 ⑧ 만성질환관리 ④ 구강관리 ⑨ 기타 ⑤ 통증관리	
	② 재활훈련 서비스	① 재활운동교육 ② 일상생활동작훈련 ③ 관절구축예방교육 ④ 2차장애예방교육 ⑤ 생활안전교육 ⑥ 기타	
	③ 사회참여 서비스	① 외출/나들이/체험 ② 동료상담/자조모임 ③ 스포츠/레크레이션 ④ 가족소모임 ⑤ 기타	
	④ 자원연계 서비스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③ 의료기관과 연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④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⑤ 자활센터와 연계 ⑥ 장애인단체와 연계 ⑦ 행정기관과 연계 ⑧ 교육기관과의 연계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⑩ 장애인 운전 지원 ⑪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⑫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⑬ 건강검진 지원 ⑭ 기타	
	⑤ 자기역량 서비스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② 기타	
	⑥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서비스		
	⑦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⑧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⑨ 기타	① 사업홍보 ② 장애체험 ③ 조사사업 ④ 연구사업 ⑤ 제작/발간 ⑥ 기타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평가항목 수행정도	전혀 할 수 없음 (1)	많은 도움이 필요(2)	중간정도의 도움이 필요(3)	경미한 도움이 필요(4)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5)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use)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	0	2	5	8	10
대변조절(bowel control)	0	2	5	8	10
소변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 이동(wheelchair) ¹⁾	0	1	3	4	5
이동(chair/bed transfer)	0	3	8	12	15
성명	검사 일자	점수 (총점 100점)			
성별	나이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주 : ¹⁾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 MBI 산출

분류	MBI 점수합계	독립수준
1	0 - 24	Total : 완전히 의존적임
2	25 - 49	Severe : 매우 의존적임
3	50 - 74	Moderate : 중등도의 의존적임
4	75 - 90	Mild : 약간 의존적임
5	91 - 99	Minimal : 최소의 도움이 필요함

삶의질 평가(EQ-5D)

* 귀하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운동능력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2. 자기관리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3. 일상활동 (예 :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4. 통증/불편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5. 불안/우울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점수	전산(PHIS)에서 산출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

EQ-5D 산출식 : $y = 1 - (0.050 + 0.096 \times M2 + 0.418 \times M3 + 0.046 \times SC2 + 0.136 \times SC3 + 0.051 \times UA2 + 0.208 \times UA3 + 0.037 \times PD2 + 0.151 \times PD3 + 0.043 \times AD2 + 0.158 \times AD3 + 0.050 \times N3)$

* EQ-5D 도구란?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건강상태 측정도구로 삶의 질 평가도구 중 하나

* EQ-5D 점수는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 산출 : -0.171~1(점수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음)

* 참조(EQ-5D 점수 평균)

일반인		장애인
만19세 이상	만 70세 이상	
0.956(±0.002)	0.868(±0.006)	0.660(±0.23)
〈2018 국민건강통계〉		〈2019 CBR사업 만족도 조사〉

* 2020년 만족도 조사 미실시

EQ-5D 산출식 :

$$y = 1 - (0.050 + 0.096 \times M2 + 0.418 \times M3 + 0.046 \times SC2 + 0.136 \times SC3 + 0.051 \times UA2 + 0.208 \times UA3 + 0.037 \times PD2 + 0.151 \times PD3 + 0.043 \times AD2 + 0.158 \times AD3 + 0.050 \times N3)$$

※ 삶의질 점수계산방식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질가중치연구(남해성, 2007, 질병관리본부)에서 도출된 보정식을 이용함.

※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해당 산출식을 적용하여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 변수정의

변수명	정의
M2	운동능력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M3	운동능력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SC2	자기관리가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SC3	자기관리가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UA2	일상활동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UA3	일상활동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PD2	통증/불편감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PD3	통증/불편감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D2	불안/우울이 '수준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AD3	불안/우울이 '수준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N3	'수준3'이 하나라도 있을 때 1, 나머지는 0

서식 7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명	
구성일	년 월 일
변경일	년 월 일
변경내용	○○○위원(○○기관) → ○○○위원(○○기관)

• 구성

연번	위원명	기관명(구분)	직 위	비고
1		○○(행정기관)		위원장
2		○○(공공기관)		부위원장
3		○○(의료기관)		간사
4		○○(복지시설)		위원
5		○○(장애인시설)		위원
6		○○(보조기기센터)		위원
7		○○(장애인단체)		위원

• 역할

기관명	역 할	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위원
		위원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안건	
회의내용	
결정사항 및 추후계획	
건의사항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상담지

성 명		상담일자	
성 별		관리번호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내소(내원)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내용			
대상자 주요구	영역	내용	대상자 우선순위
	재활/건강관리		
	건강교육 및 훈련		
	사회참여		
	복지/경제		
	정신/심리		
	기타		
종합소견	[지원계획] -		
	내부관리	<input type="checkbox"/> 일반관리	<input type="checkbox"/> 건강보건사례관리
	외부관리	<input type="checkbox"/>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input type="checkbox"/>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 고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점검지

성명								점검일자							
성별								관리번호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 점검결과	서비스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횟수	제공기관	이행여부	비고								
향후일정															
비고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

※ 기관에 연계를 위하여 서면의뢰 시 작성

의뢰하는 기관													
의뢰 받는 기관	형태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케어안내창구 <input type="checkbox"/> 복지기관 ¹⁾ <input type="checkbox"/> 기타 ²⁾											
	기관명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기본 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번호	환자				보호자							
	행정 주소지												
	퇴원 후 거주지												
	장애등록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중증 <input type="checkbox"/> 경증)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신청예정											
장기요양등급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예정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완료 : 등급) <input type="checkbox"/> 기 등급자 : 등급 <input type="checkbox"/> 추후 재 의뢰												
가구 및 돌봄	돌봄제공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유급 간병인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가구형태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자녀동거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강 수준	진단명					발병일	년 월 일						
	만성질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인지 (MMSE)	() / 30점											
	통증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부위:) <input type="checkbox"/> 간헐적 <input type="checkbox"/> 지속적											
	피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욕창(부위: 단계:)											
	보행능력	<input type="checkbox"/> 완전자립 <input type="checkbox"/> 도움필요 <input type="checkbox"/> 걷지 못함											
	보조기구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지팡이 <input type="checkbox"/> 보행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화장실 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완전독립 <input type="checkbox"/> 도움필요) <input type="checkbox"/> 기저귀 <input type="checkbox"/> 이동식변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강 수준	식사 하기	기능	<input type="checkbox"/> 완전독립	<input type="checkbox"/> 도움필요	<input type="checkbox"/> 행위 발생 안함
		연하 장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대상자 요구 사항					
보호자 요구 사항					
희망 서비스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조기적응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장애이해하기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동작관리 <input type="checkbox"/> 장애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관절운동, 근력운동 <input type="checkbox"/> 보행운동 <input type="checkbox"/>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별 자조모임 <input type="checkbox"/> 동료상담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소모임 등			
	<input type="checkbox"/> 자원연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내 연계서비스 등(방문, 금연, 절주 비만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첨부 서류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기능평가결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기인을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뢰일 : 년 월 일 담당자 _____(연락처 :)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연계 계획에 동의합니다. 환자 성명 _____(서명 :)					

1) 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장애인 스포츠센터

2) 기타: 복지기관을 제외한 민간서비스단체 등

서식 10-2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I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 II

※ 대상자와 함께 연계기관을 방문 시 작성

의뢰하는 기관					
의뢰받는 기관	형태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input type="checkbox"/> 케어안내창구 <input type="checkbox"/> 복지기관 ¹⁾ <input type="checkbox"/> 기타 ²⁾			
	기관명				
기본사항	주소	시(도)	구(군)	동(면) 까지만 기재	
	방문일자	년	월	일	
환자 및 보호자 요구 사항	방문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환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방문목적				
희망 서비스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조기적응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장애이해하기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동작관리 <input type="checkbox"/> 장애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관절운동, 근력운동 <input type="checkbox"/> 보행운동 <input type="checkbox"/> 2차 장애관리 프로그램 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별 자조모임 <input type="checkbox"/> 동료상담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소모임 등			
	<input type="checkbox"/> 자원연계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내 연계서비스 등(방문, 금연, 절주 비만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기인을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뢰일 : 년 월 일 담당자 _____(연락처 :)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연계 계획에 동의합니다. 환자 성명 _____(서명 :)					

1) 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장애인 스포츠센터

2) 기타: 복지기관을 제외한 민간서비스단체 등

서비스 회송서

의뢰기관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장애등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심한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예비장애인)		
목표 및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 • 지원계획 - - 				
제공된 서비스					
경과 및 결과					
향후계획					
상기인의 서비스 내용을 회송합니다.					
회송일: 년 월 일					
회송기관		담당자		연락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족도 조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자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오직 통계 처리만을 위해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년 월 일
 응답자: _____ (인)
 설명자: _____ (인)

조사 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보건소(보건지소)

※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경제상태는?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무응답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 ② 자영업 또는 농업 ③ 직장인 ④ 학생
 ⑤ 보수를 받지 않는 일(자원봉사 등) ⑥ 주부 ⑦ 기타 _____

5. 장애의 종류는?

① 뇌병변장애 ② 지체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기타 _____

6. 장애의 장애 정도는?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③ 기타(예비장애인)

I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관련

1. 지난 한달(30일)동안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건강이 나쁘다 ② 건강이 나쁜편이다 ③ 비교적 건강하다
 ④ 매우건강하다
2.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
 ①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완전 의존) ②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③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
 ④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완전 독립)
3.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1. '예'라고 답한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배우자 ② 부모·자녀·형제 등 가족 ③ 요양보호사 ④ 활동보조인
 ⑤ 기타()
4. 귀하는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외출을 하셨습니다? ()
- ① 거의 매일

② 주 1~3회

③ 월 1~3회

5-1. 외출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중복선택 가능

① 병원 진료 ② 산책, 가벼운 운동
 ③ 지역시설 이용 및 행사참여 ④ 친척, 친구, 이웃방문
 ⑤ 쇼핑(물건사기 등) ⑥ 통근·통학
 ⑦ 기타()
- ④ 1년에 10회 이내

⑤ 전혀 외출하지 않음

5-2.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중복선택 가능

①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② 외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없어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⑤ 기타()
6. 지난 2주간(14일) 만성, 급성질환, 사고, 중독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날은 총 며칠이나 됩니까? ()
 ① 1~3일 ② 4~6일 ③ 7~9일 ④ 10~13일 ⑤ 14일(매일) ⑥ 없음 ⑦ 모름

II 서비스 이용 관련

1. 올 해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다? ()
 ①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월 1회 ⑤ 월 2~3회
 ⑥ 분기별 1회(연 4회) ⑦ 연 1회 ⑧ 기타 _____
2. 제공받은 재활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2-1. 아니오인 경우, 서비스를 더 제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동이 어려워서 ② 적절한 서비스가 없어서 ③ 시간이 부족해서
 ④ 참여제한이 있어서 ⑤ 기타 _____
3. 주로 어떤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까? ()
 ① 보건소 내소 ② 가정방문 ③ 전화상담 ④ 기타 _____

4. 주로 어떤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까?

구분	세부프로그램	이용빈도(회)
① 건강관리 서비스	① 배뇨·배변관리	연 _____ 회
	② 욕창·피부관리	연 _____ 회
	③ 영양관리	연 _____ 회
	④ 구강관리	연 _____ 회
	⑤ 통증관리	연 _____ 회
	⑥ 연하관리	연 _____ 회
	⑦ 호흡관리	연 _____ 회
	⑧ 만성질환관리	연 _____ 회
	⑨ 기타	연 _____ 회
② 재활훈련 서비스	① 재활운동교육	연 _____ 회
	② 일상생활동작훈련	연 _____ 회
	③ 관절구축예방교육	연 _____ 회
	④ 2차장애예방교육	연 _____ 회
	⑤ 생활안전교육	연 _____ 회
	⑥ 기타	연 _____ 회
③ 사회참여 서비스	① 외출/나들이/체험	연 _____ 회
	② 동료상담/자조모임	연 _____ 회
	③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연 _____ 회
	④ 가족소모임	연 _____ 회
	⑤ 기타	연 _____ 회

④ 자원연계 서비스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연____회
	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연____회
	③ 의료기관과 연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외)	연____회
	④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연____회
	⑤ 자활센터와 연계	연____회
	⑥ 장애인단체와 연계	연____회
	⑦ 행정기관과 연계	연____회
	⑧ 교육기관과의 연계	연____회
	⑨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연____회
	⑩ 장애인 운전 지원	연____회
	⑪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연____회
	⑫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연____회
	⑬ 건강검진 지원	연____회
	⑭ 기타	연____회
⑤ 자기역량 서비스	①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연____회
	② 기타	연____회
⑥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서비스	연____회	
⑦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서비스	연____회	
⑧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연____회	
⑨ 기타(사업홍보, 장애체험, 조사사업, 연구사업, 제작/발간, 기타)	연____회	

Ⅲ 서비스 만족도 관련

1. 귀하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다음은 서비스 세부만족도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

2. 서비스 과정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담당자는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충분히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담당자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서비스의 주 당 진행 횟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⑤ 서비스의 1회 당 진행 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				

3. 서비스 결과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제공받은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제공받은 서비스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③ 주위사람들은 서비스를 통해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내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구성원들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⑤ 제공받은 서비스가 나에게 적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				

4. 서비스 체감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서비스 이용에 소요한 시간 및 노력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내가 제공받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제공받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				

5.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평가요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무슨일이 있을 때 쉽게 사업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내가 필요한 형태(방문, 내소, 전화 등)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평균 점수(총점 5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				

IV 대상자 평가

1.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수행정도					
①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0	1	3	4	5
②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③ 식사(feeding)	0	2	5	8	10
④ 용변(toilet use)	0	2	5	8	10
⑤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⑥ 착탈의(dressing)	0	2	5	8	10
⑦ 대변조절(bowel control)	0	2	5	8	10
⑧ 소변조절(baldder control)	0	2	5	8	10
⑨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⑩ 휠체어 이동(wheelchair) ¹⁾	0	1	3	4	5
⑪ 이동(chair/bed transfer)	0	3	8	12	15
점수(총점 100점)	전산(PHIS)에서 자동으로 계산				

주: ¹⁾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2. 삶의 질(EQ-5D)

평가항목	수행정도
① 운동능력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② 자기관리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③ 일상활동 (예: 일, 공부, 가사일, 여가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④ 통증/불편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⑤ 불안/우울	<input type="checkbox"/>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input type="checkbox"/>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점수	전산(PHIS)에서 산출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

3. 나의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표현하는 것을 돕고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100'으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상태를 '0'으로 표시한 눈금자를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눈금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점수(총점 100점)	점
-------------	---

* 기타 개선할 사항이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번호 C-17-21-01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역사회중심재활분야]

발행처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TEL. 02-901-1656 FAX. 02-901-1591
E-mail. nrccbr@korea.kr

인쇄처 평강도탈프린팅

※ 사전 승인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 11-1352297-000536-01
국제표준간행물번호(ISBN) : 978-89-6810-414-5 (93330)